|  |  |  |
| --- | --- | --- |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 집행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2015]29호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이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 제22호령으로 공표되었으며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관의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4월 10일부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증자 프로젝트 포함)의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체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과 부대품, 부품은 <세금면제 불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수입품목 리스트>와 <세금면제 불가 수입 중대기술장비와 제품 리스트>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수입설비 과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 해관총서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며 규정에 따라 수입단계 증치세를 과세한다.  2.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0일 이전(4월 10일 제외, 하동)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프로젝트 심사비준일, 허가일 또는 비안(備案)일을 기준으로 함, 하동)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하여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련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2016년 4월 10일 이전에 세금감면 비안(備案)수속을 해관에 신청해야 한다. 2016년 4월 10일이 경과된 후 해관은 더 이상 상기 세금감면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2015년 4월 10일 이전에 심사비준, 허가를 받았거나 비안(備案)하였고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추진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에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는 경우 해관은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3.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1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중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상의 권장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추진업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관련 수속을 해관에 신청한 후 건설중 프로젝트의 자체용 설비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부대품, 부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세금 특혜정책을 누릴 수 있다. 2015년 4월 10일(4월 10일 포함)부터 이 공고 공표일까지의 기간 중에 건설중 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해 이미 징수한 세금은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공고 공표일부터 수입설비에 대해 이미 징수한 세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생략)  해관총서  2015년 6월 18일 |  | **关于执行《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5〕29 号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第22号令公布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详见附件），并规定自2015年4月10日起施行。现就海关执行中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5年4月10日起，对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按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海关总署公告2008年第103号及其他相关规定，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  二、为保持政策的连续性，对2015年4月10日以前（不含4月10日，下同）审批、核准或备案的外商投资项目（以项目的审批、核准或备案日期为准，下同），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可继续按照规定办理免征进口关税手续。但有关项目单位须于2016年4月10日以前，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备案手续。逾期，海关不再受理上述减免税备案申请。  对于2015年4月10日以前审批、核准或备案，同时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项目，有关项目单位按相关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备案手续的，海关可予受理。  三、对于不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在建项目，凡符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鼓励类范围的，在有关项目单位按相关规定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相关手续后，在建项目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参照本公告第一条的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对于自2015年4月10日（含4月10日）至本公告发布之日期间，上述有关在建项目项下进口设备已经征税的，税款可以退还；自本公告发布之日起，进口设备已经征税的，税款不予退还。  特此公告。  附件：《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略）  海关总署  2015年6月18日 |